

# 투자권유준칙

2015. 8. 19.



**코림코지신운용**

## 1. 총칙

### 1. 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운용(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2)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3) “파생상품 등”이란 장내파생상품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 4) “금융투자상품 등”이란 금융투자상품 및 부동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법시행령 제106조 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을 말한다.

### 3. 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임직원등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 3)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 4)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II. 투자자 구분 등

### 4. 방문 목적 확인

- 1)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 5. 일반·전문투자자의 구분

-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임직원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 III.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 6.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 1)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2)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 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 임직원등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일반투자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 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그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 7.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 1)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12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2)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1)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알린 후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4) 위의 1), 2)항목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투자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8. 투자권유 절차

- 1)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
- 3)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 등 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 4)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및 해당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고지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 9. 투자권유시 유의사항

- 1)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 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다. 투자자(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제외한다)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라. 관계법령 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의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2)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 3)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 등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 10. 설명의무

-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 등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 등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2) 임직원등은 1)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경험과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지식수준 등 투자자의 이해수준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3) 임직원등은 1) 및 2)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임직원등은 1)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 IV. 금융투자상품 등의 위험도 분류

### 11. 금융투자상품 등의 위험도 분류

- 1) 회사는 다음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를 [별표2]와 같이 분류한다.
  - 가. 정량적 요소 :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 등의 목표 투자기간 등
  - 나. 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성 등
- 2) 회사는 1)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등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경우 장내 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다)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한다.
- 3) 회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4) 임직원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 등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측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 V.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 12. 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 1) 임직원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등을 거래하기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 나.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다.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 2) 임직원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1)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투자자문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13. 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조제3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나.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 다.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라.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 14.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특칙

- 1)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 가.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 나. 투자자문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 다. 투자자문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 라.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 마. 투자자문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 바.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사.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 아.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 2)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1)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 가. 1)의 각 호의 사항
  - 나.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 다.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 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 15. 투자자문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 및 2)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1) 및 2)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 2)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3) 투자권유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5) 투자자문에 응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또는 매매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부칙(2015. 8. 19.)

이 준칙은 2015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투자수익·위험에 대한 태도 <input type="checkbox"/> ±0% 범위 <input type="checkbox"/> ±10% 범위 <input type="checkbox"/> ±20% 범위 <input type="checkbox"/> ±30% 범위 <input type="checkbox"/> ±30% 범위 초과	
투자기간	<input type="checkbox"/> 1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년이상 ~ 2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2년 이상 ~ 5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5년 이상 ~ 10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0년 이상	
과세형태	<input type="checkbox"/> 종합과세대상 <input type="checkbox"/> 일반과세대상	
투자운용 형태	<input type="checkbox"/> 주식관련사채 + 주식 + 파생상품(선물, 옵션) <input type="checkbox"/> 주식관련사채 + 주식 <input type="checkbox"/> 주식관련사채 (신용등급 낮은 회사채 포함) <input type="checkbox"/> 주식관련사채 (신용등급 높은 회사채 투자) * 법인의 경우 내부규정 유무	
투자금액	<input type="checkbox"/> 1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1억 이상 ~ 1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10억이상 ~ 5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50억 이상	
기타 상담내용		

본인은 본인이 제공한 위의 투자자 정보가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가족관계	부양가족 ( 있음 / 없음 )
작성 고객명 대리인	서명/인 서명/인	날짜	년 월 일

투자권유문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7조에서 정하는 서면자료 (투자권유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	서명 / 인
투자상품 투자위험 (원금손실 가능 등)에 대하여 고지 받았습니다.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귀사에 통지하여야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투자상품 매매 및 결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투자권유 또는 업무담당 직원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는 방법을 고지 받았습니다.	

관리자 확인	서명/인	날짜	년 월 일
--------	------	----	-------

[참고2]

##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아래의 분류에 적합하지 판단 후 해당 운용형태 선정 가능

투자 운용 형태별 위험도 분류	<p><input type="checkbox"/> <u>주식관련사채 + 주식 + 파생상품(선물, 옵션)</u></p> <p>총 금융자산대비 총투자상품의 비중이 30%이하인 고객 위의 상품에 투자경험이 있고, 없을 경우라도 투자목적이 적극적이며, 손실위험이 있더라도 투자수익을 중요시 하는 투자자</p>	
	<p><input type="checkbox"/> <u>주식관련사채 + 주식</u></p> <p>총 금융자산대비 총투자상품의 비중이 30%이하인 고객 위의 상품에 투자경험이 있고, 없을 경우라도 투자목적이 적극적이며, 손실위험이 있더라도 투자수익을 중요시 하는 투자자</p>	
	<p><input type="checkbox"/> <u>주식관련사채 (신용등급 낮은 회사채 투자)</u></p> <p>총 금융자산대비 총투자상품의 비중이 50%이하인 고객 위의 상품에 투자경험이 있거나, 없을 경우라도 투자목적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정도의 수익실현목적 이상인 고객 원금보존을 고려하나 투자수익 중요시 하는 투자자</p>	
	<p><input type="checkbox"/> <u>주식관련사채 (신용등급 높은 회사채 포함)</u></p> <p>총 금융자산대비 총투자상품의 비중이 70%이하 고객 위의 상품에 투자경험이 있거나, 없을 경우라도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 헤지목적까지의 투자자 투자수익을 고려하나 원금보존이 더 중요한 투자자 투자수익.위험에 대한 태도 ±10% 범위 투자자</p>	